

ANDANTE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 일원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내 AA21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224세대 중 잔여 148세대 (전용면적 74㎡ 14세대, 84㎡ 134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 주택은 **소득 및 자산, 과거당첨사실 여부(인천검단 AA21블록 기당첨자, 부적격당첨자 제외)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회공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1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63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9.06) 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에 LH 브랜드인 'ANDANTE'를 사용하며, 아파트 주동 측벽 로고에도 적용됩니다.
-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gd-aa21.co.kr/>) 및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가능하며 청약 전 주택전시관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건본주택) 관람은 2023.04.21(금) ~ 23(일) (10:00~17:00)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실물 건본세대는 74A, 84A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3년)

공 고	건본주택 관람	접 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계 약	
						전자	현장
4.14(금)	4.21(금) ~ 23(일) (10:00 ~ 17:00)	1순위 - 4.26(수) 2순위 - 4.27(목) (10:00~17:00)	5.04(목) (16:00)	당첨자 - 5.09(화) (10:00~17:00) 예비자 - 5.10(수)~11(목) (10:00~17:00)	6.07(수)~6.08(목) (10:00~17:00)	6.12(월)~6.13(화) (10:00~16:00)	6.14(수)~6.15(목) (10:00~16: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당첨자조회 ARS 1661-7700				LH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 서류접수 및 현장 계약 장소 : 인천검단 주택전시관 1층(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공고일(2023.04.14) 기준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최초 모집공고('22.09.06 공고)시 당첨자 및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아래 <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최초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용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급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납입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약신청이 불가하고,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청약 가능)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3.06.12(월)~13(화)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현장계약을 진행하실 당사자분들께서는 현장계약 체결기간에 LH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에서 'V. 당첨자(에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마이너스입선 신청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계약 후 부부공동명의 신청 시, 전자계약 해제 후 다시 현장계약 체결 필요)

※ 입금계약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바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 공공분양주택 15~20층 1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224세대 중 잔여 148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 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기공급				금회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1,224	1,076	148	20	59			
AA21	074.9900A	74A	확장	74.9900	20.9353	8.9936	39.6303	144.5492	56.6832	442	428	14	20	23	'25.6월
	084.9800A	84A	확장	84.9800	23.7243	10.1917	44.9098	163.8058	64.2344	782	648	134	20	36	

- * 1층 세대수는 최대 배정 가능수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1층 세대수는 11호(74형 1호, 84형 10호)입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순위별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용자금
					10%	15%	15%		(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24.04.12)	(‘24.11.12)	입주 시	
074.9900A	74A	1층	기본형	353,590	35,359	53,039	53,039	137,153	75,000
			마이너스옵션	326,870	32,687	49,031	49,031	121,121	
		2층	기본형	361,270	36,127	54,191	54,191	141,761	
			마이너스옵션	334,550	33,455	50,183	50,183	125,729	
		3층	기본형	368,960	36,896	55,344	55,344	146,376	
			마이너스옵션	342,240	34,224	51,336	51,336	130,344	
		4층	기본형	376,650	37,665	56,498	56,498	150,989	
			마이너스옵션	349,930	34,993	52,490	52,490	134,957	
		5층 ~ 최상층	기본형	384,340	38,434	57,651	57,651	155,604	
			마이너스옵션	357,620	35,762	53,643	53,643	139,572	
084.9800A	84A	1층	기본형	400,570	40,057	60,086	60,086	165,341	75,000
			마이너스옵션	370,290	37,029	55,544	55,544	147,173	
		2층	기본형	409,280	40,928	61,392	61,392	170,568	
			마이너스옵션	379,000	37,900	56,850	56,850	152,400	
		3층	기본형	417,990	41,799	62,699	62,699	175,793	
			마이너스옵션	387,710	38,771	58,157	58,157	157,625	
		4층	기본형	426,700	42,670	64,005	64,005	181,020	
			마이너스옵션	396,420	39,642	59,463	59,463	162,852	
		5층 ~ 최상층	기본형	435,410	43,541	65,312	65,312	186,245	
			마이너스옵션	405,130	40,513	60,770	60,770	168,077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주방/식당	드레스룸	현관
74A	기본공사비(A)	67,579	17,021	789	11,467	11,467	5,334	14,794	6,708	-
	확장공사비(B)	74,700	17,444	2,007	12,041	12,041	6,155	18,077	6,935	-
	계약자부담액(B-A)	7,121	423	1,218	574	574	821	3,282	227	-
	마이너스 옵션 시 계약자 부담액	6,053	360	1,036	488	488	698	2,790	193	-
84A	기본공사비(A)	71,280	18,358	789	11,687	12,491	4,385	16,789	6,781	-
	확장공사비(B)	78,760	18,738	2,007	12,223	13,053	5,180	20,572	6,986	-
	계약자부담액(B-A)	7,480	379	1,218	536	562	795	3,784	205	-
	마이너스 옵션 시 계약자 부담액	6,358	323	1,036	456	478	676	3,216	174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단위 : 천원)	계약금	잔금
금액	1,000천원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1,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납부시기	계약 시	입주 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가구류, 현관중문, 주방룩담 등

※ 추가선택품목의 신청기한 이후에는 공사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추가 신청 또는 선택사항의 변경이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3.06.07~06.08)에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옵션 구조를 공고문에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시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74A	침실1	미설치	①-1 드레스룸+화장대(벽체, 여닫이도어 포함)	3,910	391	3,519	①-1, ①-2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①-2 대형드레스룸(벽체, 슬라이딩도어 포함)	3,770	377	3,393			
	침실3	미설치	② 불박이장	2,740	274	2,466			
			③ 반침장	1,300	130	1,170			
	현관	미설치	④ 현관중문	1,740	174	1,566			
			⑤ 현관창고	⑤-1 현관창고+주방팬트리	840	84		756	
	주방	미설치	⑥ 냉장고장	⑥-2 대면형 신발장+대형팬트리	1,430	143	1,287	⑤-1, ⑤-2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⑥-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440	144	1,296		
				⑥-2 냉장고장+팬트리키큰장	2,050	205	1,845		
	주방	일반싱크볼 주방벽 도기질타일 아트월 포셀린타일	미설치	⑥-3 대형냉장고장+키큰장	1,870	187	1,683	⑥-1, ⑥-2, ⑥-3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⑦ 싱크볼, 주방벽,아트월	⑦ 대형싱크볼 주방벽 대형포셀린타일 아트월 대형포셀린타일	990	99		891
				⑧ 룩담	가스룩담(3구)	⑧-1 인덕션(2구)+가스룩담(1구)	780		78
	⑧-2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540	54			486			
	⑧-3 인덕션(3구)	570	57			513			

84A	침실1	① 드레스룸	미설치	①-1 드레스룸+화장대(벽체, 여닫이도어 포함)	3,950	395	3,555	①-1, ①-2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①-2 대형드레스룸(벽체, 슬라이딩도어 포함)	3,800	380	3,420	
		② 붙박이장	미설치	② 붙박이장(3문형, 벽체포함)	2,850	285	2,565	
	침실3	③ 반침장	미설치	③ 반침장	1,590	159	1,431	
	현관	④ 현관중문	미설치	④ 현관중문(슬라이딩도어)	1,740	174	1,566	
		⑤ 현관창고	현관창고	⑤-1 현관창고+주방팬트리	920	92	828	⑤-1, ⑤-2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⑤-2 대면형 신발장+대형팬트리			1,530	153	1,377		
	냉장고장	⑥	미설치	⑥-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470	147	1,323	⑥-1, ⑥-2, ⑥-3 중 하나만 선택가능
				⑥-2 냉장고장+팬트리키친장	2,200	220	1,980	
				⑥-3 대형냉장고장+키친장	1,960	196	1,764	
	주방	⑦ 싱크볼, 주방벽, 아트월	일반싱크볼 주방벽 도기질타일 아트월 포셀린타일	⑦ 대형싱크볼 주방벽 대형포셀린타일 아트월 대형포셀린타일	1,170	117	1,053	* 옵션 선택 시 주방상판 뒷선반 없음
				⑧ 쿡탑	가스쿡탑(3구)	⑧-1 인덕션(2구)+가스쿡탑(1구)	780	78
⑧-2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540	54	486					
⑧-3 인덕션(3구)	570	57	513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목재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가구 도어(현관창고, 팬트리, 다용도실 등) 일체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현관 디지털도어록, 내·외부 PL창호, 목재공틀, 욕실/다용도실 문틀 하부실, 실외기실 문틀 및 문짝, 실외기실 루버
② 바닥	강화합판마루, 결레받이, 현관 바닥재, 마루귀틀, 욕실 바닥타일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등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 아트월 벽타일, 주방 벽타일, 드레스룸 경량벽체, 욕실 벽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벽체 CRC보드,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천장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경량천장을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배기구,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비상콜(해당욕실)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물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시스템선반(현관창고, 팬트리, 다용도실)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빨래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하향식피난구, 외부 발코니난간대,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자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선,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보증)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보증 사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 사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어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자격(거주 지역, 무주택)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14)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인천첨단 AA21블록 기당첨자, 부적격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불가합니다.(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 취소됨)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청약 가능)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3.05.04)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축물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 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원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순위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1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자격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공급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처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본 단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10.05)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출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신청자 수가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도 **당첨자와 동일한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역시 적용**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된 기재하신 분은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 장소
1순위	2023. 04. 26(수)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2순위	2023. 04. 27(목) (10:00 ~ 17:00)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팜플릿 등으로 동·호베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순위별 신청시간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위별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는 인천검단 AA21BL 주택전시관(032-561-0712)으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순위별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일반 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순위별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V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당첨자가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2023.05.04(목) 16: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당첨자) 2023.05.09(화) 10:00~17:00 (예비자) 2023.05.10(수) ~ 05.11(목) 10:00~17:00	(전자)2023.06.12(월) ~ 06.13(화) 10:00~16:00 (현장)2023.06.14(수) ~ 06.15(목) 10:00~16: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LH 인천검단 주택전시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인천지역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3.05.09~2023.05.11)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가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필수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직계존속	• '08.1.1. 이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1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했을 경우는 개명전·후 모두 발급
○		⑦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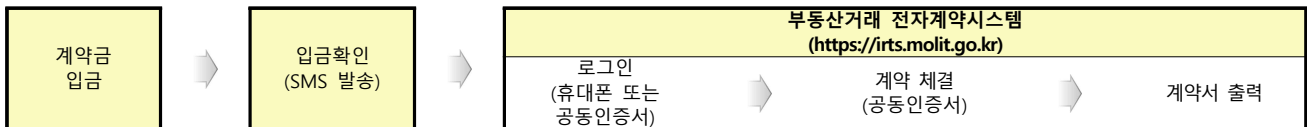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 계약금(1,000천원) +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계약자) 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④ 본인(계약자) 도장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계약체결 절차



※ 전자계약 진행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처리 됩니다.

V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차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절차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생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욕 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정 세면기		기 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2023.06.14~2023.06.15)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대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59호, 2021.12.21)로 승인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4차),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지구계획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불로동, 마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인천광역시청에서 15km, 인천서구청에서 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 북측으로는 김포시와 시경계를 이루고 있음.
- 지구의 북서측 4Km 거리에 김포항산신도시, 남서측 8Km 거리에 청라국제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측 10km 거리에 3기신도시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지구의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에서 직선거리 3km이내에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인천지하철 2호선 원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역(계양~검단신도시)이 착공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사업 진행중임.
- 국도 48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원당~태리간 도로’, ‘검단~명령로간 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로의 접근이 향상될 예정임.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여러 유형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 본 사업지구 인근에 군부대(원당대대, 공군방공부대) 및 김포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초·중·고등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사업지구와 연계된 김포시 감정동 및 풍무동 일원 도로는 김포시 도로사업 계획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김포시 감정동 및 풍무동 일원 도로사업 계획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 및 지구내 건축시설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 사업자의 설치계획 및 기타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유7, G3, 초6, 중6, 대1)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당해지구 내 공공청사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관청의 건립시기 조정 및 건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배수지, 오수중계펌프장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 인근에 묘지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당해지구 내에는 군부대(원당대대 등)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에서 동쪽으로 약 3km 거리에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남서쪽 약 3km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이 위치하고 있음. 또한 단지 남쪽 약 1km 거리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계양~검단신도시)이 착공되어 공사중에 있음.
- 본 단지는 인천광역시청에서 약 18km, 인천서구청에서 약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 북측으로는 김포시와 시경계를 이루고 있음.
- 본 단지의 북서쪽 약 4Km 거리에 김포한강신도시, 남서쪽 약 10Km 거리에 청라국제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쪽 약 12km 거리에 제3기신도시 인천계양·부천대장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본 단지 남쪽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인접해 있으며, 동쪽은 근린공원, 북쪽은 녹지와 인접하고 있음.
- 본 단지 동쪽으로 약 500m 거리에는 김포장릉 및 공원묘지가 위치하고 있음.
- 청약 전에 해당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의 유무와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인천검단신도시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 분빛,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 및 단지 외부 연결 보행로는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식 시공공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아파트 1층에 부대복리시설(상가 포함)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인접세대에서는 배기팬 및 에어컨실외기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각 동 전·후면의 소방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곡목 식재가 불가하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리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공동주택 특성상 아파트 지하층 또는 지하주차장에 공용시설물(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실, 펌프실, 저수조, 제연실, 집수정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비류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옥상에 무동력 및 동력 환출기가 근접해 있어 상층 및 주위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및 PIT층에 소방용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이 근접 세대에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1층, 지상1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상가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자전거보관대, 어린이놀이터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전용도로 및 소방차전용구역(위차,개소 등)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기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내 보차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형태, 재질, 색채 등은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준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표시, 아파트 문양, BI로고, 벽체출근 및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물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울타리 및 담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인천시와 체결할 예정이나 입주(예정) 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됨.
- 단지 내 주차장은 입주자용 지하주차장 1,543대(장애인용 48대 포함), 상가용 지상주차장 6대가 설치될 예정임. 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내 주차구역(장애인용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차량경보등의 경광 및 경보음과 차량진주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임.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어 있으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먼지 유입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아파트 각동 출입구 인근에 무인택배시스템(무인택배함)이 설치될 예정임.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지하층에는 계절창고로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 세대수 비율과 관계없이 설치되므로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의 계절창고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고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움.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되었으며, 개별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자전거 보관대는 법적 설치수량을 산정하여 단지 전체에 분산 설치되며,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님.
- 지하층 엘리베이터층에 설치되는 환기팬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에 의거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고정형) 3대, 완속충전기(이동형) 59대로 총 62대 설치될 예정임. (본 공사 시 일부 수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증계장치는 4502동, 4504동, 4506동, 4509동, 4510동 지붕층, 지하층 및 데크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옥외안테나는 4502동, 4504동, 4506동, 4507동, 4509동, 4510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임.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전파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509동 옥탑층에 지상파(UHD디지탈)안테나 및 무궁화5호,6호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생활자원보관소, 지하주차장, 각 동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태양광발전설비는 4505동~4513동(9개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임. (태양광모듈 및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모듈의 빛 산란에 따라 일부 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4502동, 4504동, 4506동, 4512동 아파트 옥탑층 또는 그 주변에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 됨.
- 항공장애표시등의 빛 발광에 따라 일부 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단지와 접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내부 측면부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내부 측면부에 1개소만 설치됨.
- 공공주택성능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이 본 인증 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포장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세대별로 실외기실 바닥에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층별로 다름.(1층 세대, 필로티 상부세대 등 최하층 세대는 미설치)
- 실외기실 내 하향식피난구 상부 또는 주변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피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을 적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부위(거실,주방,침실,알파룸,드레스룸 등)는 직접외기에 면해 창호 및 벽체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주택형의 발코니에 위치한 세탁기실 및 실외기실은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출입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설치할 제품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면 발코니에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창을 개방하여 실외기실 온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세대내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은 기본적으로 거실(스탠드형) 및 침실1(벽걸이형)에만 설치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창호, 가구, 타일, 인조대리석,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가구류(주방가구 상하부장, 신발장, 욕실수납장 등) 및 옵션선택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류(불박이장, 반침장, 화장대 등)가 접해 있는 벽체,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환관, 발코니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됨.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 예정임.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대내부에 설치되는 무늬가 있는 타일은 동일한 패턴으로 시공되어 있지 않음.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함.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거실 아트월예 벽걸이 TV 등 시설물 고정 시 충격에 의해 포셀린타일이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일부 단열재 설치구간(발코니 확장부위)에 TV 고정 시에는 별도 보강조치 후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뽀칠로 시공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차량유도등, CCTV카메라 등 일부 시설물이 노출되어 시공됨.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단, 어린이집과 경로당에는 주방가구와 신발장 설치)
-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조명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 및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에는 선정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천장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욕실 천장에 점검구 및 환기용 욕실팬이 설치되며,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주방배기는 공용배기 방식으로 욕실에 배기팬이 설치되며, 세대 렌지후드에는 댄퍼만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 및 화재감지기가 설치됨.
-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가스콕담 주위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음.
- 급수·급탕계량기함은 엘리베이터홀에 있는 공용PD 내부에 설치됨.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74A내입 썬크대 상부 천장에는 주방배기 댄퍼용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임.
- 세대 내 주택용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2 벽체에 매입 설치될 예정임.
- 드레스룸(파우더룸 포함) 내부 콘센트 및 전등스위치는 추가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상이함.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감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모델하우스, 팜플릿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냉장고 자리에 별도 정수기용 급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피난용사다리,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 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세대환기), 비상상황 알림 서비스(부부욕실 비상호출버튼),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 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놀이터CCTV, 차량출입통제시스템연동, 스마트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를 제공함.
- 스마트홈 생활정모기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일괄소등, 외부날씨정보 확인(온도, 미세먼지정보) 기능이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는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적합한 규격으로 적용하여 설치되며, 동별 승강기의 규격(인승, 속도)은 상이할 수 있음.
- 승강기는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별도의 에어컨(냉방장치) 설비는 설치되지 않음.(승강기 내부의 공기유입은 에어컨 설비가 아닌 공기청정기 및 환기팬에 의한 것임)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리모컨 제어)으로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의 경우 일반층은 천장형 조명기구, 최상층은 벽부형 조명기구가 설치 됨. (단, 실외기실은 벽부형 조명기구임)
- 후면 발코니에는 세탁기 전원용 콘센트, 실외기실에는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만 설치되며, 기타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스마트홈 구축 통신사업자로 KT,SKT,LGU+ 3개사가 선정되어 아파트 앱 서비스 및 AI 스피커가 적용됨.
- 각 통신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IoT"앱을 통하여 아파트 세대 내 조명, 가스, 난방, 세대환기 등 기기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음. (스마트폰 통신사 무관)
- AI 스피커 사용 시, 음성 제어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통신사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시 각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각 통신사의 상품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음.
- AI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인터넷이 설치되어야 하며, IoT 가전 연동을 위하여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세대 내 인터넷 및 WiFi 사용료는 입주자 부담)
- IoT 가전 기기는 입주자 별도구매 사항이며, IoT 서비스는 해당 통신사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됨.
- TV/뮤직/인터넷전화 등 일부 서비스는 각 통신사에서 책정한 별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 할 수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	개교시기
유치원	유7	미정	'25.3월
초등학교	초6	미정	'25.9월
중학교	중6	미정	'26.3월
고등학교	고3	미정	미정

※ 지구 내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 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주예정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사전방문행사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주택전시관(사이버 주택전시관 포함),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지 등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전시관(사이버 주택전시관 포함),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 디스플레이 가전 제품, 기타 전사용품(보조조명, 커튼, 디스플레이 패널 등 전사용으로 설치된 벽부위 장식물 일체,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전시관(사이버 주택전시관 포함),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등에 표현된 내·외부 색채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사이버 주택전시관 포함) 및 단지모형 등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 입주일(잔금 완납하고 열쇠를 수령하여 입주절차를 완료한 날)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분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기본형)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본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외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품 목	74A / 84A	비 고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
	바닥	포셀린타일
	마루귀틀	엔지니어스톤
거실	신발장	데코시트(PET)
	천장 / 벽체	실크벽지
	바닥	강화합판마루
	아트월	포셀린타일
	우물천장	설치(간접조명 포함)
침실	각실 출입문(침실, 욕실 등)	데코시트
	천장 / 벽체	실크벽지
	바닥	강화합판마루

주방	천장	실크벽지		
	바닥	강화합판마루		
	주방벽	도기질타일		
	주방가구	문짝	데코시트(PET)	
		상판	엔지니어스톤	
	주방설비	레인지후드	침니형(공용배기용)	
		가스레인지	가스쿡탑 3구형	
음식물탈수기		설치		
싱크용절수기		설치(전자식, 핸드터치형)		
욕실	벽체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천장	ABS판넬		
	뒷선반	엔지니어스톤		
	위생설비	양변기	욕실1 : 준원피스형 욕실2 : 원피스형	
		세면기	도기제	
		욕실수납장	2도어 슬라이딩형	
		욕조	필아크릴	
		샤워부스문	접합유리	
		비데	욕실1 : 양변기 분리형 욕실2 : 양변기 일체형	
		샤워기	욕실1 : 선반형(안마헤드) 욕실2 : 수납일체형(안마 및 레인형헤드)	
휴지걸이	스마트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매립형)			
발코니	천장 / 벽체	내부수성페인트		
	바닥	자기질타일		
	합성수지 창호	데코시트		
	자동빨래건조대	설치(발코니1)		
냉난방, 환기설비	에어컨 냉배 매립배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실별 온도조절기	설치		
	세대환기시스템	설치		
전기설비	실별 조명등	LED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설치	세대 내 콘센트의 약 30% 적용	
정보통신설비	세대단말기	월패드(칼라 10인치)		
	스마트홈 생활정보기	설치		
	화장실 비상호출버튼	설치	욕실1 비상호출버튼 설치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사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88,157,876
	기간이자		6,460,325
	필요적 경비		159,410
	그 밖의 비용		9,273,954
	계		204,051,565
건축비	공사비	토공사	2,319,682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64,293
		석축공사	41,323
		우·오수공사	1,230,333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4,222
		도로포장공사	537,557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7,079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13,661,436
		부대시설공사	348,356
		계	18,244,281

건축비	공사비	건축	공통가설공사	3,866,915
			가시설물공사	8,156,136
			지정 및 기초공사	10,292,266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47,368,468
			용접공사	-
			조적공사	3,638,824
			미장공사	5,760,514
			단열공사	5,917,835
			방수·방습공사	4,748,417
			목공사	7,026,681
			가구공사	879,849
			금속공사	1,480,854
			지붕 및 환통공사	270,998
			창호공사	13,979,391
			유리공사	3,190,081
			타일공사	4,187,590
			돌공사	5,704,888
			도장공사	3,702,215
			도배공사	1,776,471
		수장공사	2,698,848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1,351,313	
		계	135,998,554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2,366,069
			급탕설비공사	1,797,899
			오배수설비공사	10,136,845
			위생기구설비공사	5,582,228
			난방설비공사	6,860,519
			가스설비공사	1,530
			자동제어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198,928
			공조설비공사	5,385,025
			계	32,329,043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8,007,688
			정보통신공사	7,782,175
			소방설비공사	11,794,914
			승강기공사	3,325,933
		계	40,910,71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9,158,641
			이윤	15,682,281
			계	24,840,922
		간접비	설계비	4,706,743
			감리비	1,836,778
			일반분양시설 경비	747,070
분담금 및 부담금	4,008,943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8,445,828			
계	19,745,362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29,030,831		
합계			505,151,27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나. 태평양감정평가법인
208,540,212,300 원	206,281,654,040 원	210,798,770,560 원

9.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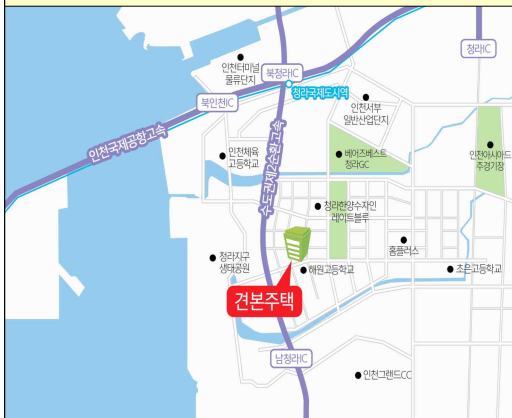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계	기간이차	말뚝박기공사비	흙막이공사비	기타비용	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공동주택성능등급가산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주택건설추가비용	법령개정때문에추가건설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지하주차장충고증가비용	사업승인부가조건가산비
									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초고속통신	기계환기설비				
금액	17,615,385	7,160,144	10,104,844	173,717	176,679	32,175,616	4,838,734	4,725,480	5,076,551	1,107,547	201,414	1,787,054	4,732,591	73,649	443,729	9,188,867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공사이행보증인	감리회사
AA2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31-82-13727)	동부건설 주식회사 (201-81-45685) 주식회사 신성건설 (418-81-10256)	건설공제조합	(주)목양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해솔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신원기술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립 (주)컨차이엔이 (₩9,402,000,000)

11. LH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및 분양 문의



- 위치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운영 기간 : 주택전시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코로나 19 확산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gd-aa21.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 032-561-0712 (10:00 ~ 17:00)

LH 인천 지역본부